#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김영진·백혜련·김민기

이원욱 • 윤관석 • 김경협

인재근 · 최종윤 · 박상혁

최혜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재정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비율은 75 대 2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예산 배분 비율에비해 더 높은 비율로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임.

하지만 지방정부 스스로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의 재정 자립을 이루어냄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분권 강화 및 국토 균형 발전의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현행 납부하는 세액의 10 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 납부하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

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1제5항).

법률 제 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31제5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1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
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	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
세) ① ~ ④ (생 략)	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	5
조의32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	
(연결법인을 포함한다)이 미환	
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	
액의 <u>100분의 10</u> 에 해당하는	<u>100분의 20</u>
금액을 제103조의19에 따른 과	
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